

◆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안 검토 ◆

발제 :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안 제정 추진

최석진(국제 환경교육연구소), 김이성(서울대박사과정), 신호상(공주대),
이선경(청주교대), 이재영(공주대), 조길영(국회환경포럼)

1. 법 제정 추진 경과

○ 제정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1983 - 2000. 11) : 김귀곤(1983), 안기희(1991)와 최석진(1994) 등이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위한 입법 제안.

○ 1차 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성안 (2001. 2 - 2002. 1) : 공주대에서의 환경포럼(2000년) 등을 거쳐서, 2001년 2월에 한국환경교육학회에서 한국민간환경단체진흥회에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선정되어,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에 착수 이후 법 시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여러 구체적 활동 전개 및 보고서 발간

○ 1차 법안 수정 및 발의와 폐기 (2002. 2 - 2004. 5) : 전년도에 동 법 연구진이 계속하여 추진하여, 2002년 12월 31일 : 국회 이정일 의원 외 23명의 의원 서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하고 구체적 활동 추진.

그러나, 2004. 5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됨.

주요 이유는 부처간의 이견과 그의 조정 노력 미흡, 선언적인 내용으로라도 제정한 후에 추후 보완하자는 제안이 수용 안됨, 국회 발의 제안 이후에 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노력 및 관련 담당 주무 측의 관심 미흡. 16대 국회의 임기 종료 등

○ 재 제정 추진 (2005. 1 - 현재) : 2004년 이후 일부 전문가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 제정 추진에 관심을 보였으며,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2005년,국회)

2006년 1월 이후, 국제 환경교육연구소(소장 최석진)에서 한국민간환경단체진흥회에 동 법 제정을 위한 과제 신청 및 선정되어 위의 새로운 연구진을 구성하고 시안 개발 등의 활동 중

2. 차후 추진 계획

- 2006. 7 :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 발표대회에서의 시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2006. 7- 8 : 한국환경교육학회 이사회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등 민간단체와 각종 협의회를 통하여 추가 의견 수렴, 반영
- 2006. 8. 24(목) : 공청회 개최 - 국회의정관에서 2시 부터.
국회환경포럼 및 한국환경교육학회, 국제환경교육연구소 등과 공동 개최 예정
- 2006. 9 - 10 : 수정 집중 작업 및 토론회 개최 :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초청 의견 수렴.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 2006. 10 : 국회 상임위원회 발의 추진
- 2006. 12 : 국회 본 회의 통과 추진 목표

3. 동 법 시안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을 지원, 보다 체계화 하여 환경교육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식을 함양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라 함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전 국민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가치관을 습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환경기술전문분야 또는 환경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인력에 대한 환경기술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라 함은 초·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고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종합계획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환경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
2.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
3. 환경교육사 및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환경교육 담당자의 확보와 연수
4.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 각 단위에서 환경교육 강화방안
5. 계획에 따른 예산소요 전망 및 조달계획
6. 환경민간단체의 운영과 협력 및 일반 단체에서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7.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교육진흥 시책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도별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 ①국가는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의결
2. 기타 환경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조정

②위원회의 사무국은 환경부장관 아래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 추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장학지도 및 평가 추진 노력 경주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의 상급(정교사 1급·2급, 교감, 교장)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자에 대한 연수 시간에 환경교육 강좌 포함 노력
4.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다양한 환경교육 현직 연수 실시 권장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환경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환경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민간단체(환경NGOs)의 등록 및 이들 단체의 활동에 협조와 지원에 노력
2. 환경민간단체(환경NGOs)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운영에 상호 협력 및 노력하고 매년 그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
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가능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이 관여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매년 보고
4.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실시에 필요한 실비는 환경기금이나 자체 예산에서 보조하도록 추진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직자 대상 연수에 환경교육관련 강좌 포함 노력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

제8조 (직장에서의 환경교육 진흥) ①사업자 및 국민이 조직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업자,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는 피고용의 환경 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피고용 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관계되는 자료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환경교육사제도 등) ①국가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둔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별도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와

연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자원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한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환경교육진흥예산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매년 환경교육 예산의 확보와 증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거점 체제의 정비) ① 국가는 국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체제 정비에 노력한다.

1. 국민,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교육 내용에 관한 정보와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제

2. 환경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자료 등에 관련하여 조언할 수 있고 그 밖의 환경 보전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체제

3.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 민간단체 등에게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에 관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각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게 국민, 민간단체 및 국가가 실시하는 환경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의 기능 강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국민, 민간단체 등의 토지, 건물 제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임시설비 및 시적인 사용 때문에 설정된 것이 명확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한 자가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자연체험 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제공하는 것과, 기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의 의욕의 증진에 관련하여 체험 기획의 장소로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 (정보의 적극적 공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의욕 증진 및 그 밖의 환경 보전 활동에 국민과 민간단체 등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과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전 항의 정보 수집, 정리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고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내의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도록 권하며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소양 및 전공 교육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환경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개발과 개발된 내용의 적극적인 도입
2.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환경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3.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자체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4. 고등교육 기관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 보급을 위한 노력

제 16 조 (환경교육진흥협회설립) ① 국가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환경교육진흥협회를 설치하고, 관련 국가 연구기관 내에 환경교육 연구 개발 담당 조직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진흥협회의 역할, 조직, 운영 및 경비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